E - 77 - 2015

휴대 전기기기 정비에 관한 기술지침

2015. 6
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

안전보건기술지침의 개요

o 작성자: 인천대학교 안전공학과 황명환

o 개정자 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최상원

o 제·개정 경과

- 2011년 11월 전기안전분야 제정위원회 심의(제정)
- 2015년 6월 전기안전분야 제정위원회 심의(개정)
- o 관련규격 및 자료
 - KS C IEC 60745-1 수지형 전동공구의 안전성-일반요구사항
 - Maintaining portable electrical equipment (HSE)
- o 관련법령·고시 등
 -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장(전기로 인한 위험방지) 제2절(배선 및 이 동전선으로 인한 위험방지)
- 0 기술지침의 적용 및 문의
 - 이 기술지침에 대한 의견 또는 문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(www. .kosha.or.kr)의 안전보건기술지침 소관분야별 문의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 - 동 지침 내에서 인용된 관련규격 및 자료, 법규 등에 관하여 최근 개정본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개정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공표일자 : 2015년 6월 29일

제 정 자 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

E - 77 - 2015

휴대 전기기기 정비에 관한 기술지침

1. 목적

이 기술지침은 고정된 주 전원 또는 이동식 발전기에 연결되어 사용되는 휴대 전기기 기의 손상, 마모, 오용 등으로 인해 전기감전이나 화상 또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정 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2. 적용범위

이 기술지침은 사업주, 자영업자 또는 작업자가 휴대 전기기기를 안전한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정비를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.

3. 용어의 정의

- (1) 이 기술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 - (가) "리스크(Risk)"란 휴대 전기기기의 결함으로 인한 감전위험 등 특정 목적에 영향을 주는 긍정 또는 부정적인 상황의 발생기회에 대한 불확실성을 말한다.
 - (나) "휴대(Portable)"란 고정된 설치물의 일부가 아닌 것으로서 케이블, 플러그, 소켓 또는 이와 유사한 수단으로써 고정 설치물이나 발전기에 연결하여 사 용하는 경우를 말한다.
- (2) 그 밖의 용어의 정의는 이 기술지침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, 같은 법 시행령,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

E - 77 - 2015

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4. 리스크 관리

- (1) 휴대 전기기기의 정비불량은 전기사고의 주요 원인이며, 사고피해의 크기는 휴대 전기기기의 종류, 사용방식 및 사용환경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.
- (2) 리스크가 높은 작업의 예는 220 V 전원 공급으로 작동하는 고압 세척기이다. 연결된 긴 전선이 차량이나 다른 장비 또는 지면에 고인 물로 인해 손상을 입을 수 있으며, 전선 또는 전기부품의 손상은 사용자 및 다른 사람에게 감전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.
- (3) 휴대 전동드릴이나 절삭기 같은 장비도 건설현장과 같이 물기가 있는 환경에서 사용되는 경우 기계적 손상을 입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리스크가 높은 휴대 전기기기로 간주한다.
- (4) 사무실 및 호텔 등과 같이 안전한 환경에서 사용되는 바닥청소 설비나 전기주전 자 등에 의한 전기사고 리스크가 낮은 수준이나, 이러한 휴대 전기기기 역시 과 도한 사용으로 인해 마모될 수 있으며, 이는 감전, 화상 또는 화재의 리스크를 야기할 수 있다.
- (5) 휴대 전기기기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하는 리스크의 관리는 반드시 위험성평가에 기초하여야 한다. 위험성평가 수행에 대한 기술지침은 안전보건기술지침 "리스크평가 절차에 관한 지침"을 참조하며, 이러한 리스크에는 본 기술지침의 9항(정비의 주기)에서 제시한 조치를 포함하여 적절한 정비시스템을 설정함으로써 제어할 수 있다.
- (6) 휴대 전기기기는 잠재적으로 위험한 전기충격이나 지역화재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, 정비시스템은 사고 후 조치를 하는 사후처리 보다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예방 차원에서 계획되어야 한다.

E - 77 - 2015

- (7) 사고예방을 위한 정비절차는 건축현장 등과 같이 리스크가 높은 곳에서는 빈번 하게 수행하고, 사무실과 같이 비교적 리스크가 낮은 곳에서는 낮은 빈도로 수행할 수 있다.
- (8) 사용을 허가받지 않은 기기(예; 전기히터나 주전자, 커피메이커, 환풍기 등)의 사용은 통제되어야 하고, 또한 정비시스템 안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. 사용이 허가된 기구일지라도 사용자 확인이나 정식 육안점검을 받지 않은 기구는 적절하게 수리될 때까지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.
- (9) 최초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, 육안점검과 시험의 수행주기를 결정하기 위하여 <표 1>의 정비주기 예시를 참조할 수 있으며, 정비책임자는 제안된 간격을 활용하거나, 휴대 전기기기의 종류, 용도와 주변환경을 고려하여 정비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.

<표 1> 정비주기의 예시

구 분	사용자 점검	전문가 육안점검	시험 및 검사
대여 장비	-	장비사용 전/반납 후	장비사용 전
건설 현장	매일/교대시	매주	사용하기 전 및 사용 후 매월
경공업	필요	처음 사용 전 및 사용 후 6개월 마다	6~12개월
중공업 (장비손상의 높은 리스크)	매일	매주	6~12개월
사무정보기기	불필요	2년 ~4년	이중절연의 경우 불필요, 아니면 최대 5년
휴대 용도가 아닌 이중절연구조	불필요	2~4년	불필요
휴대형 이중절연구조	점검	6개월~1년	불필요
접지된 휴대 전기기기	점검	6개월~1년	1~2년
케이블, 플러그, 리드선	점검	6개월~4년	1~5년

E - 77 - 2015

5. 휴대 전기기기의 사용

- (1) 휴대 전기기기와 전원 연결장치(플러그, 케이블, 단자대 등)를 사용하는 경우 고 정설치물의 경우보다 휴대 전기기기의 물리적 손상과 마모 가능성이 더 높다.
- (2) 전원인가시 작동하는 휴대 전기기기는 위험한 결함이 있는 경우 이를 취급하고 있는 작업자가 감전될 확률이 매우 높다.
- (3) 대부분 휴대 전기기기의 안전은 노출 금속부분의 효과적인 접지에 의존하므로, 금속외함이 충전되고 접지상태가 불량하면 작업자가 이에 접촉하는 경우 치명적 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.
- (4) 다른 범주의 휴대 전기기기는 (■으로 표기된 이중절연구조를 포함한다.)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고강도 절연으로 제작되어 접지를 별도로 할 필요가 없는 구조이다.

6. 케이블

- (1) 가장 손상되기 쉬운 부분은 전기를 공급하는 케이블이다. 대부분의 휴대 전기기 기는 유연성 케이블로 연결한다.
- (2) 케이블은 반복적으로 휘거나 기계적 충격으로 인해 단선될 수 있고, 노후화 또는 주변 환경에 의해 손상될 수도 있다.
- (3) 반복적 또는 과도한 휨은 도체의 파손 및 피복의 손상을 야기하게 된다. 초기에는 케이블이 휴대 전기기기나 플러그에 들어가는 연결부위에서 손상이 발생한다. 이러한 손상은 사용자의 사전점검에 의해 확인 가능하며, 이는 반드시 보고가 되어야 한다.

E - 77 - 2015

7. 정비

7.1 일반원칙

- (1) 안전수준이 휴대 전기기기와 케이블 및 연결장치의 정확한 선택과 사용에 의해 초기에는 달성되었더라도, 지속적인 안전확보를 위해서는 효과적인 정비를 통해서 가능하다.
- (2) 사용자는 문제가 발생할 경우 사용을 멈추고 이를 보고하는 등 휴대 전기기기를 합리적으로 다루어야 한다.
- (3) 휴대 전기기기의 안전확보는 완전한 접지 및 전기기기에 전원을 공급하는 소켓 의 올바른 사용법 등에 달려 있다.
- (4) 정비에는 육안점검, 시험 및 검사, 수리 및 교체작업을 포함한다. 정기점검과 적절한 시험은 휴대 전기기기가 안전한 상태로 유지되도록 하기 위한 전체 정비계획의 일부에 해당한다.
- (5) 휴대 전기기기의 효율적인 정비는 다음의 방법에 의해 수행된다.
 - (가) 사용자의 점검
 - (나) 육안점검 교육을 받고, 공식적으로 지명된 자에 의한 점검
 - (다) 전기전문가에 의한 점검 및 시험
- (6) 사업주는 정비시스템의 효율성을 감시하고, 문제발생시 정비조치를 취하는 절차를 관리하여야 한다.

7.2 사용자 점검

(1) 휴대 전기기기의 사용자는 설비를 면밀히 관찰하여 다음과 같은 비정상적 징후를 확인해야 한다.

E - 77 - 2015

- (가) 케이블 외피의 손상
- (나) 플러그의 부서짐이나 핀의 굴절 등
- (다) 전선연결부의 테이핑 등 부적합한 연결상태
- (라) 케이블 외피가 플러그 또는 휴대 전기기기로 들어가는 경우, 절연상태가 효과 적으로 유지되지 않는 경우, 예를 들면 케이블 코어의 색상 처리된 절연 부분 이 밖으로 드러나는 경우
- (마) 휴대 전기기기가 적합하지 않은 환경에서 사용되는 경우
- (바) 외함의 손상 또는 부품이나 나사가 느슨한 경우
- (사) 과열의 흔적이 있는 경우
- (2) 사용자 점검은 연장선, 연결된 플러그 및 소켓에도 적용되며, 사용자는 휴대 전기기기가 사용되거나 사용 중인 때에 반드시 육안점검을 시행하여야 한다.
- (3) 문제가 발견된 경우 반드시 보고하여야 하고, 휴대 전기기기의 사용을 즉시 중지 하여야 한다.
- (4) 사업주는 정비를 수행할 자격을 갖춘 사람이 수리를 할 때까지 휴대 전기기기가 사용되지 않도록 '고장'이라는 표식을 부착하고, 연결되어 있는 플러그를 뽑아두 는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.

7.3 전문가 육안점검

- (1) 정비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훈련된 사람에 의해 정기적으로 수행하는 육 안점검이다.
- (2) 육안점검을 통해 대부분의 잠재 위험요소를 발견할 수 있으므로, 정비체계에는 반드시 이를 포함시켜야 한다.
- (3) 육안점검에서는 휴대 전기기기의 분해작업을 포함하여서는 안 된다. 분해 작업이 필요한 경우 점검 및 시험을 병행하여 실시하여야 한다.
- (4) 육안점검은 정기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며, 점검주기는 휴대 전기기기의 종류, 사

E - 77 - 2015

용 조건 및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.

7.4 시험 및 검사

- (1) 케이블, 케이블 연결단자, 휴대 전기기기 등의 손상 부분은 사용기간이 상당히 지난 후에 나타날 수 있다.
- (2) 접지상대, 절연의 불량상대, 내·외부 표면의 오염 등은 육안점검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으며, 이의 확인을 위하여 정기적인 시험이 필요하다.
- (3) 다음과 같은 경우 시험을 수행하여야 한다.
 - (가) 육안점검으로는 확인되지 않으나, 휴대 전기기기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
 - (나) 수리, 개조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작업 후
 - (다) 휴대 전기기기 사용 후 적절한 주기마다
- (4) 시험을 수행하는 경우 다음의 내용을 사전 확인하여야 한다.
- (가) 공급케이블의 올바른 극성
- (나) 퓨즈의 올바른 연결
- (다) 케이블 및 전선의 단자대 연결상태
- (라) 사용 휴대 전기기기의 주변 환경
- (5) 휴대 전기기기의 시험을 수행하는 자는 적절하게 훈련을 받아야 하며, 이들의 능력을 다음의 두 단계로 나눌 수 있다.
 - (가) 1단계는 전기작업에 숙달되지 않은 자가 휴대 시험기기에 의해 '고장/정상'을 판단하고, 이에 대한 별도의 해석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이다. 1단계는 시험기기의 정확한 사용법만 알면 되므로, 시험절차가 정확하게 수립되고, 허용기준이 분명하게 정의된 경우 활용할 수 있다.
 - (나) 2단계는 전기와 관련하여 적절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자가 실질적인 결과를

E - 77 - 2015

산출하기 위한 해석을 필요로 하며, 정밀기기를 사용하는 단계로 전문기관에 검사를 필요로 한다.

8. 정비 및 시험의 기록유지

- (1) 정비 및 시험의 기록유지는 정비체계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유용한 관리도구이다.
- (2) 정비기록은 휴대 전기기기 목록으로도 사용될 수 있으며, 허가되지 않은 설비가 사용되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.
- (3) 정비기록은 점검 중 발견된 결함내용을 포함할 수 있으며, 이를 통해 휴대 전기 기기의 마모 정도가 평균치보다 높은 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.
- (4) 시험결과의 기록은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시험결과의 경향을 파악하여, 예방정비를 할 수 있게 한다.
- (5) 기록물이 반드시 종이로 보관될 필요는 없으며, 휴대 전기기기의 측정결과를 데 이터베이스로 저장할 수 있다.

9. 정비의 주기

- (1) 정비의 주기는 책임자의 판단사항으로서 위험성평가에 기초하여야 한다. 이는 안 전보건기술지침 "리스크 평가 절차에 관한 지침"에서 리스크의 평가 중 일부로 수행할 수 있다.
- (2) 정비체계가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책임자가 육안점검 및 시험주기를 결정하기 위하여 4항(리스크 관리)의 <표 1>을 활용할 수 있다.
- (3) 정비주기를 결정하기 위한 위험성평가에는 다음의 요소가 고려되어야 한다.

E - 77 - 2015

- (가) 휴대 전기기기의 종류 및 휴대가능 여부
- (나) 제조업체의 권고사항
- (다) 휴대 전기기기의 초기 정상상태
- (라) 휴대 전기기기의 노후화 정도
- (마) 휴대 전기기기의 사용환경 및 기계적 손상 가능성
- (바) 사용 빈도 및 작동 주기
- (사) 휴대 전기기기의 과도한 사용정도
- (아) 휴대 전기기기의 개조 또는 수리로 인한 영향
- (자) 정기점검과 시험을 포함한 과거 정비기록의 분석
- (4) 몇 번의 정기적인 육안점검 후에 얻은 정보는 향후 점검주기를 결정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. 예를 들면 낮은 고장률은 점검주기를 연장시킬 수 있고, 높은 고장률은 점검주기를 줄일 수 있다.

10. 수리 및 교체

- (1) 손상된 휴대 전기기기를 안전한 상태로 수리하여야 하는 경우 전문지식과 경험이 필요하다.
- (2) 특별한 경우 수리하는 것보다 저렴한 휴대 전기기기로 대체하는 것이 비용측면 에서 효과적일 수도 있다.
- (3) 오랫동안 사용한 가요성 케이블의 도선, 절연체, 외장 등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손상되기 때문에 수리하기 보다는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.
- (4) 길이가 긴 케이블의 경우 손상된 부분이 한쪽 끝에 가깝다면, 그 부분을 잘라내고 건전한 부분을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, 손상부분이 끝 근처에 없다면 손상된 부분을 제거한 후, 케이블 연결기를 활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.